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사회보장급여의이용·제공및
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
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330호, 2021. 7. 27. 공포, 2022. 1. 28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위기아동 발굴 강화(안 제8조제4항 신설 및 별표 2 제3호다목)

- 1) 교육감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등의 성명·생년월일·성별·주소와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를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.
- 2)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.

나.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이용 자료의 범위 확대(별표 1 제8호)

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이자·배당소득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2조제4항”을 “법 제12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은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생등(이하 이 조에서 “학생등”이라 한다)의 성명·생년월일·성별·주소와 해당 학생등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

제20조제1항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”를 “시·도”로 한다.

별표 1 제8호 중 “일용근로자소득명세·근로장려금·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”를 “일용근로자소득명세·근로장려금·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·이자배당소득명세서(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

원 이상인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정보)”로 한다.

별표 2 제3호다목1) 중 “선별급여”를 “선별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 각 호의 의료급여”로, “같은 법 제41조제1항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1항”으로, “요양급여를”을 “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 각 호의 의료급여를”로 하고, 같은 목 2) 중 “요양급여”를 “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 각 호의 의료급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<u>법 제12조제4항</u> 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·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·단체·시설을 말한다. 1.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법 제12조제5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④ <u>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은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생등(이하 이 조에서 “학생등”이라 한다)의 성명·생년월일·성별·주소와 해당 학생등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</u>
제20조(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) ① 법 제35	제20조(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) ① -----

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시·도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144